

# 생명과나눔센터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한 생명과나눔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센터는 가천대학교 생명과나눔센터(이하, '센터')라 부른다.

**제3조(소재 및 설치)** 본 센터는 가천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내에 둔다.

## 제2장 사 업

**제4조(본 센터의 목적)** 본 센터는 생명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생명존중의 태도 및 인성을 함양하고 창의적이며 융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목 개발과 운영을 관할한다.

**제5조(사업)** 본 센터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생명과나눔 강의관련 업무
2. 생명과나눔 교재 구성관련 업무
3. 학생들의 발표관련 지원
4. 생명과나눔 인증 실시 및 운영
5. 생명의 소중함과 관련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운영
6.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## 제3장 조 직

**제6조(구성)** ①본 센터는 센터장, 연구위원, 연구원, 행정보조원 등으로 구성하며, 본 센터의 운영을 위해 운영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.

②본 센터는 운영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③본 센터는 교육과정연구개발부(명칭변경 2015.08.28.), 평가부 등의 부서를 둘 수 있다.

**제7조(자격 및 임명)** ①센터장은 본 대학교의 교원 중에서 가천리버럴아츠칼리

#### 4-1-26~2 제4편 부속기관

지 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15.05.26.)

②운영책임교수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15.05.26.)

③생명과학전담교원은 본 대학교 교원채용절차에 의해 임용 후 본 센터에 배속되며 그 임기는 임용 시 계약기간에 따른다. 생명과학전담교원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.

④연구원은 본 대학교 생명과학 관련 교·강사 중에서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연구원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의 임명으로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.(개정 2015.05.26.)

⑤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이 5인 이내로 임명한다. 그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15.05.26.)

⑥본 센터에는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교 등 행정보조원을 둔다.

**제8조(직무)** ①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②운영책임교수는 본 센터의 각종 사업과 실무를 주관한다.

③생명과학전담교원과 연구원은 본 센터에서 주관하는 생명과학 교육을 담당하고, 센터장의 지휘아래 각종 사업을 기획·추진한다.

④운영위원은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, 자문한다.

⑤행정보조원은 일반 사무를 처리하고 생명과학전담교원과 연구원을 보조한다.

**제9조(직원)** ① 센터는 생명과학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.

### 제4장 운영위원회

**제10조(설치)** 본 센터에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심의, 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.

**제11조(조직)**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고,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, 운영책임교수, 생명과학

전담교원 등 당연직 위원과 운영위원, 연구원으로 구성하고,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5.05.26.)

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행정직원으로 한다.

**제12조**(업무 및 권한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·변경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
2. 각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예산수립, 결산,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4. 센터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**제13조**(소집과 회의)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,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에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정기회의는 회의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4조**(회의록) 회의록은 회의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재 정

**제15조**(경비 및 연구비) 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연구비는 본교의 교비지원금, 정부보조금, 용역사업비, 기부금,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**제16조**(회계연도)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가천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**제17조**(발전기금) 본 센터는 발전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

## 제6장 보 칙

**제18조**(운영세칙) 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4-1-26~4 제4편 부속기관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